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 법률제정안 의견제출 선협,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규정 삭제토록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보안시설 확보비용은 항만시설주의 항만시설 운영비용(운영원가)의 일부이며, 항만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설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하역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항만보안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법률제정안 제23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된 추가비용

발생시 시설운영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당해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시설보안료 징수를 법으로 정할 경우 앞으로 항만시설 관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때 마다 법으로 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보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 보전은 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시설운영자와 사용자가 상 관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동 규정의 삭제를 거듭 건의했다.

무역의 날 포상관련 수출실적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

2006년도 무역의 날 포상에 해운기업의 참여 가능

한국선주협회는 7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무역의 날 포상관련 수출실적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제조업의 수출물품에만 적용되던 수출의 범위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운서비스용역(운수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6년도 무역의 날 포상에 해운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적외항선사 기획 및 회계, 경리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에서 상계 처리후 입금된 매출액에 대한 실적 산출방안, 수출실적 발생기간과 입금일자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수출실적 산출방안, 은행의 확인절차 등 포상을 위한 수출실적 산출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7월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지방해운대리점료 조정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선형별, 선종별 요율조정방안을 협의했다.

국적외항선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방해운대리점협회에서 요청한 대리점료 요율인상안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조정폭을 논의했다. 협회는 매년 지방해운대리점협회와 대리점요율 협정안을 체결, 8월1일부터 적용해 왔다.